

2021. 3.

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



충청남도의회
(입법정책담당관)

... 목 차 ...

I. 추진 방향	1
II. 추진 개요	1
III. 세부 추진계획	2
① 사전설명회 및 기초자료 수집	2
② 연구용역 추진	2
③ 평가결과 활용	4
IV. 전년도 대비 운영 개선방안	5
① 2020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 추진	5
①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일부개정 추진	5
②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	6
③ 자체 입법평가 추진기반 마련	6
② 통합 입법평가시스템 개발 추진	7
③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·협력기반 마련	8
V. 향후 계획	8

[붙임] 1. 추진일정

2. 평가대상 조례

3. 조례 사후 입법평가 관련 자료 서식

4.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

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

❖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임.

I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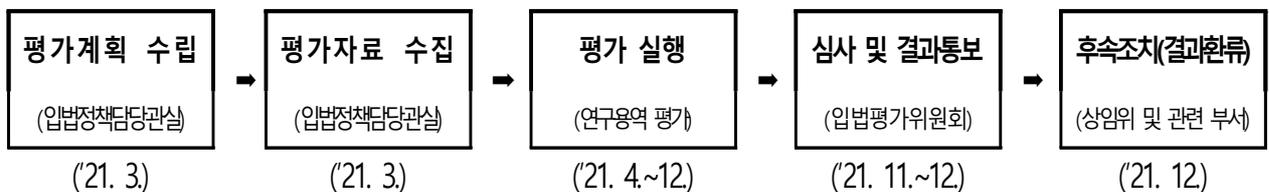
- 2021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
- 규범·정책평가 및 예산분석을 통합하는 선도적 입법평가시스템 개발 추진
- 2020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

II 추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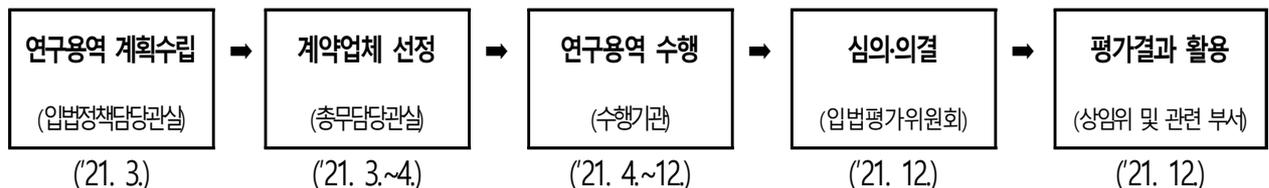
- (추진근거)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
- (평가대상) 188개 조례 (※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)
- (평가기간) 2021년 3월~12월
- (평가기준) ※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제4조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·실효성 | ②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|
| ③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| ④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|
| ⑤ 위원화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| ⑥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|

○ (평가절차)



○ (평가방법) 연구용역 평가



- (소요예산) 115,725천원(위원회 운영 15,725천원, 연구용역비 100,000천원)

Ⅲ 세부 추진계획

1 사전설명회 및 기초자료 수집

① 평가대상 조례 담당자 사전설명회 개최 (입법정책담당관실)

- (내 용) 입법평가 목적·방법·절차·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·제출 등 안내
- (대 상) 도청·교육청 평가대상 조례 담당자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 직원
- (시 기) 2021년 3월중

②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(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 → 입법정책담당관실)

- (내 용)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평가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,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제출
- (근 거)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제9조
- (제출서류) 각 평가대상 조례별 사후 입법평가 기초자료
 - ※ 기초자료는 지정서식【붙임 3-11】을 작성하여 제출
 - ※ 평가항목별 기초자료를 증빙하기 위한 기타 첨부자료는 임의서식 작성·제출 가능
- (제출기간) 2021년 4월중

2 연구용역 추진 (※ 별도 계획 수립, 3월중)

① 개 요

- (근 거)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제8조
- (대 상) 188개 조례(※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)
- (기 간) 2021년 4월중 ~ 12월중(8개월)
- (내 용) 입법평가 조례에 의한 용역대상 조례 입법평가
- (예 산) 100,000천원
- (계약방법) 수의계약(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)

②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

- 연구용역 목적 및 필요성
-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
- 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계획 등
- 계획수립 : 2021년 3월중

③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

- 연구용역 수행기관 : 입법평가 전문기관
-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)
 - ※ "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"로서 "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"
- 업체선정 : 2021년 3월말~4월초
- 계약체결 : 총무담당관실에 계약체결 의뢰(입법정책담당관실→총무담당관실)

④ 연구용역 수행

- 용역대상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
- 평가 방법 : 입법평가 기초자료 분석 및 분석지표 등에 따른 평가
 - 자료 제공 : 집행부 작성·제출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초자료 등 제공
 - ※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추가보완 자료 요청 시 집행부 소관부서 적극 협조 및 필요시 집행부 소관부서 방문조사
- 수행기간 : 2021년 4월중~12월중
-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(※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병행)
 - 착수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
 - 중간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4월 이내 연구 중간결과 보고
 - 최종보고회 : 계약만료 20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
 -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

⑤ 입법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

- (대 상) 연구용역 수행결과*
 - *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시 제기된 수정·보완사항 등이 반영된 연구용역 결과
- (시 기) 2021년 12월
- (기 준) 사후 입법평가 기준(조례 제4조)
- (절 차) 심의자료 위원별 발송 → 위원별 사전검토 → 회의 개최
- (평가의견 확정)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심의·조정하여 최종평가의견* 확정
 - * ① 적정, ② 개정, ③ 폐지, ④ 기타(통·폐합, 이행권고 등)

⑥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제출

-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등 제시
 - 전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종합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요약
 - 개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작성 및 평가의견 제시
 -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(개정안, 통·폐합안 등) 제시
- 입법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
- 제출기한 : 2021년 12월

3 평가결과 활용

- 입법평가 결과 통보 및 활용(입법정책담당관실→ 상임위 도청 및 교육청) : 2021년 12월말
 - (입법정책담당관실) 입법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【붙임 3-④】 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, 도 본청 및 교육청 통보
 - (상임위원회) 입법평가 결과(조례 개정 등)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
 - (도청 및 교육청) 최종평가결과(개정, 폐지, 기타)에 따라 향후 조치 계획 【붙임 3-⑤】 을 작성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
- 입법평가 결과 공표(입법정책담당관실) : 2021년 12월말
 - 도의회 홈페이지 (의정활동 → 입법평가위원회 → 자료실)

IV 전년도 대비 운영 개선방안(별도 계획 수립·시행)

1 2020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 추진

2020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("20.12.7.) ⇨ 의장님 결재("20.12.14.)

- 2020년 25개 조례 대상 시범평가(자체평가 및 연구용역 평가 병행) 분석 결과
 - ①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한 입법평가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
 - ② 입법평가팀 신설을 통한 전문적 자체평가 실시 추진
 - 자체평가가 평가결과, 이유, 대안 제시 등에서 모두 우수
 - 전담팀(4명) 신설을 통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하여 조례의 지속가능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

①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일부개정 추진

- (목적) 2020년도 시범평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
- (주요내용) 평가대상 확대, 평가지표 개선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
 - 평가대상 확대 : (현행) 법령위임조례 제외 → (개선) 법령위임조례 포함
 - 평가지표 개선 : 헌법위반·기본권침해, 상위법령 위배여부 지표 추가
 -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
 - 위원 정수 확대 : (당초) 15명 → (변경) 20명
 - 위원 임기 조정 : (당초) 3년 → (변경) 2년*
 - * 경과규정 : 2026. 7. 1. 효력발생 (제13대 도의원과 제3기 입법평가위원 임기 일치)
 - 보궐위원 임기 명시 :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
- 추진시기 : 2021년 상반기

【주요 개선방안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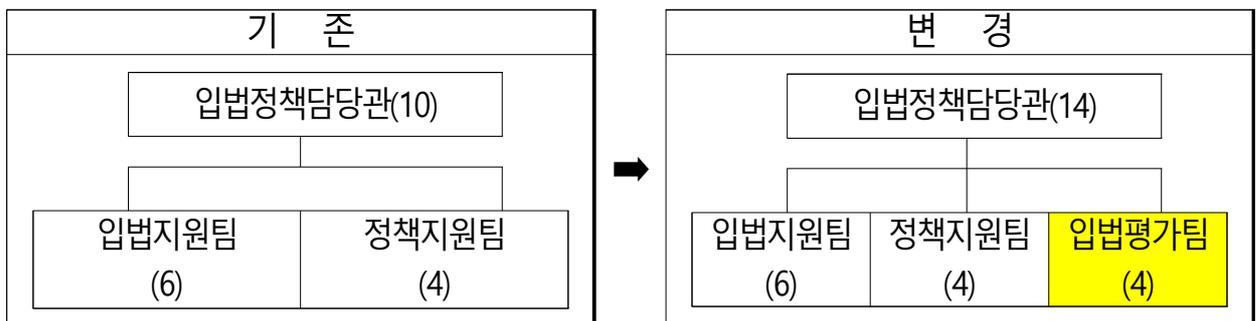
구 분	현 행	개선방안
평가대상 확대(제3조)	법령위임조례 제외	법령위임조례 포함
평가지표 개선(제4조)	8개 평가항목, 33개 세부항목	8개 평가항목, 35개 세부항목 ※ 2개 세부항목 추가 ① 기본권 침해 ② 상임법령 위배
입법평가위원회 개선(제5조)		
위원 정수 확대	15명	20명
위원 임기 조정	3년	2년
보궐위원 임기 명시	-	전임위원 잔여 임기

②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

- (목 적) 다양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평가의 신뢰성 제고
- (추가위촉) 5명 (※ 위원정수 15명 → 20명)
 - 위 원 : 도의원,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,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, 기타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
 - ※ 위원의 전문성 및 법정 성비기준(특정 성비 60% 이하) 고려하여 추가 위촉방안 마련
 - 임 기 : 위촉일 ~ 2023년 6월 9일* (1차 연임 가능)
 - * 경과규정 : 추가 위촉위원과 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일치
- (추진시기) 2021년 상반기(「충청남도 조례 시후 입법평가 조례」 일부개정 후)

③ 자체 입법평가 추진기반 마련

- (목 적) 지속가능한 자체 입법평가 추진을 위한 「입법평가팀」을 신설하여 전체 조례 대상 주기적 평가 및 중요 조례 대상 심층평가 추진기반 마련
- (필 요 성)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전문적·객관적 자체 입법평가를 통한 합리적 입법대안(제개정, 폐지, 통폐합 등) 마련
- (내 용)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「입법평가팀」 신설 및 4명 증원
 - 조직개편(안)



- 인력증원(4명) : 팀장 1명, 6급 2명, 7명 1급

※ 전문적인 입법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5급(팀장) 및 6급 각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

- (추진시기) 2021년 조직개편 시

2 규범·정책평가 및 예산분석을 통합하는 입법평가시스템 개발 추진

- (목 적) 규범적 평가 및 사회·경제학적 분석방법 등을 통합하는 선도적 입법평가시스템 개발 추진
- (내 용) 중요 조례 1개 대상으로 규범·정책평가 및 예산분석 등을 통합하는 시범평가 추진
- (방 법)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협업
 - 시범평가 대상 조례 선정, 평가방법, 평가결과 등 주요 사항 상호 협의
 - 입법평가 분석지표(조례 제4조 관련 별표)의 성격에 따라 세부항목별 검토분담 협의

【세부항목별 검토분담(안)】

평가항목	세부항목	분담
1.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	① 위임조례 구분 ② 위임근거의 적정성 ③ 위임범위 내 제개정 ④ 조례 제개정 이후 유사 법령 등 제정 여부 ⑤ 권리유보조항 등에 대한 법률 위임 여부	입법정책 담당관실
2. 조례의 실효성	⑥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 여부 ⑦ 유사동일 다른 조례와의 통합 필요성 ⑧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⑨ 책무 부여 여부 ⑩ 책무 및 사업 이행	입법정책 담당관실
3. 조례의 공평성	⑪ 장애인, 성별차별 등 여부 ⑫ 차별의 합리성	입법정책 담당관실
4. 주민 수용성	⑬ 입법예고 여부 ⑭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여부 ⑮ 조례 관련 민원 여부 ⑯ 쉬운 조례 체계 및 용어	입법정책 담당관실
5. 조례 내용의 적정성	⑰ 재정지원 규정 여부 ⑱ 지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⑲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이행 여부 ⑳ 지원대상의 구체성 ㉑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 ㉒ 재량권 범위의 적정성	입법정책 담당관실 예산정책 담당관실
6. 충남 현실 부합성	㉓ 충남 현실과 조례의 부합 여부	입법정책 담당관실
7.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	㉔ 위원회 설치 근거 ㉕ 위원회의 법적 성질 ㉖ 위원회 위원 성별구성의 적정성 ㉗ 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 보존 여부 ㉘ 위원회 유지 필요성 ㉙ 위원회 통합 필요성	입법정책 담당관실
8. 종합의견	㉚ 조례 현행 유지 필요성 ㉛ 조례 개정 필요성 ㉜ 조례 폐지 필요성 ㉝ 기타 의견	입법정책 담당관실 예산정책 담당관실

- (추진시기) 2021년 3월~7월

3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·협력기반 마련

- (목적) 자치분권 2.0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·입법평가 분야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·협력기반 마련
- (협력대상) (중앙기관) 한국법제연구원, 국회입법조사처
(지방의회) 강원, 경기, 울산, 제주 (※ 입법평가제도 시행)
- (협력분야)
 -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 상호협력
 - 자치분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
 -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연구주제 발굴, 세미나, 공동연구 수행
 - 학술자료, 연구보고서 등 교환을 통한 지식 및 정보의 상호 활용 등
- (협력방법) 상호협력 협약(MOU) 체결 등 수시 교류 협력방안 마련
- (추진시기) 2021년

V 향후 계획

-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: '21. 3월
-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: '21. 3월
-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 추진 : '21. 3월~4월
- 시범평가 추진(통합 입법평가시스템 개발) : '21. 3월~7월
- 연구용역 평가 추진(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 등) : '21. 4월~12월
- 입법평가 결과 심의 및 공표 : '21. 12월
- 입법평가팀 신설 : 조직개편 시